

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

(박은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206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8.

발 의 자 : 박은경 의원 외 14명

1. 제정이유

- 자치분권, 협치 시대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는 시민자치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,
-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~제2조)
-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~제4조)
-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민주시민 교육 내용과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~제7조)
-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(안 제8조~제12조)
- 민주시민교육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(안 제13조~제14조)
-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및 교류협력,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(안 제15조~제1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붙임 2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)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있음(붙임 4)
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5(집행부 검토의견서)

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안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시민교육”이란 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·가치·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 관철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.

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⑤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,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제4조(적용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.

②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과 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시행 할 수 있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, 산하기관 및 사무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임·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6조(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)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,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
 2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
 3. 시민의 권리와 의무, 참여와 책임, 의사소통, 합리적 의사결정, 갈등조정,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
 4. 자유, 자율, 공정, 준법, 배려·나눔,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
 5. 인권, 환경, 성평등, 미디어, 노동, 평화,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
 6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
-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, 가치각성,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7조(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2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3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·물적·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5.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
6. 학교와 지역사회,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
7.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·운영하기 위한 안산시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원
2.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·단체의 관계자
4.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촉 해제)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

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민주시민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5조(민주시민교육의 이수)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교류협력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, 다른 시·도, 기초자치단체,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·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박은경 대표발의 (행정 3564)

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206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9. 2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상위법에 근거한 교육내용 반영 및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기와 맞추도록 하며,
-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제한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민주시민 교육 내용 중 '성평등' 교육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'양성평등' 교육으로 수정 (안 제6조)
-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(안 제7조)
- 민주시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3조)

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5호 중 “성평등” 을 “양성평등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3년” 을 “5년” 으로 한다.

안 제13조를 삭제하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6조(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) ① 민주 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----- <u>성평등</u>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조(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) ① 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양성평등</u>,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<u>3년</u>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5년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13조(민주시민교육의 위탁)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< 삭제 ></p>

원 안	수정안
제14조 ~ 제17조 (생 략)	제13조~제16조 (원안 제14조부터 제17조 까지와 같음)